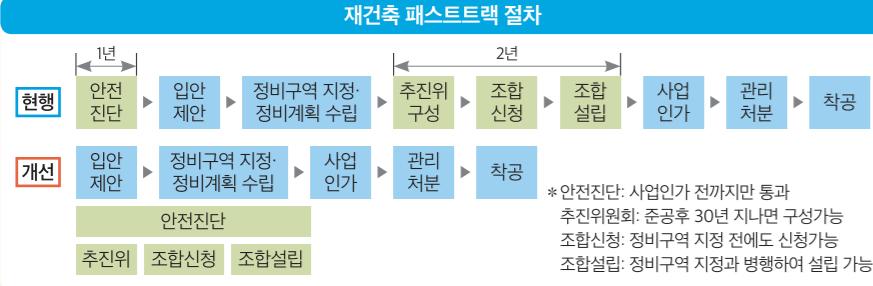


04 정비사업 관련 1·10대책 주요 내용

■ 패스트트랙 도입

- (안전진단) 준공 30년 도과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용
- (사업주체 구성 조기화) 준공 30년 도과시 추진위 구성 가능
 -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동시 처리 허용
- (신탁방식 효율화) 사업계획인가 시 : 現) 전체회의+주민동의→改) 전체회의



■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

- (노후도 요건 완화) 30년 이상 건축물 요건 완화(現 2/3 → 改 60%)
- (지정 요건 완화) 입안요건 불부합 지역 포함(現 10% → 改 20%)
- (공유자 동의요건 완화) 현 전원동의 → 改 3/4동의로 인정

재개발 노후요건 완화

(현행)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2/3이어야 노후도 요건 충족
 (개정) 노후도 요건 60%로 완화, 촉진지구 지정시 50%로 완화
 (효과) 정비구역 추진 가능 대상지역 확대

구역지정 요건 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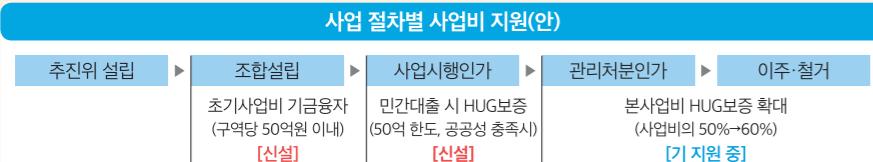
(현행) 노후도 등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도 10%까지 포함 가능
 (개정) 입안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도 20%까지 포함
 (효과) 나대지나 차고지 등도 포함하여 한 번에 정비 가능

공유자 동의요건 완화

(현행)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공유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인정
 (개정) 공유자 3/4동의로도 토지등소유자 동의인정
 (효과) 공유관계가 복잡한 필지도 포함하여 개발 가능

■ 사업 초기 자금지원 등

- (자금지원 신설) 관리처분인가 이전 기금융자제공, HUG 보증대상 확대
 - 공공성, 사업가능 여부 심사하여 초기사업비 융자
- (재건축 부담금 완화) 면제 초과이익 상향, 부과구간 확대 등



■ 공사비 갈등 완화

- (표준계약서) 공사비 조정 지수, 조정 가능시기 등 규정(24.1월)
- (분쟁조정위 효력 강화) 조정위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협력 부여

05 컨설팅 신청 방법

■ 신청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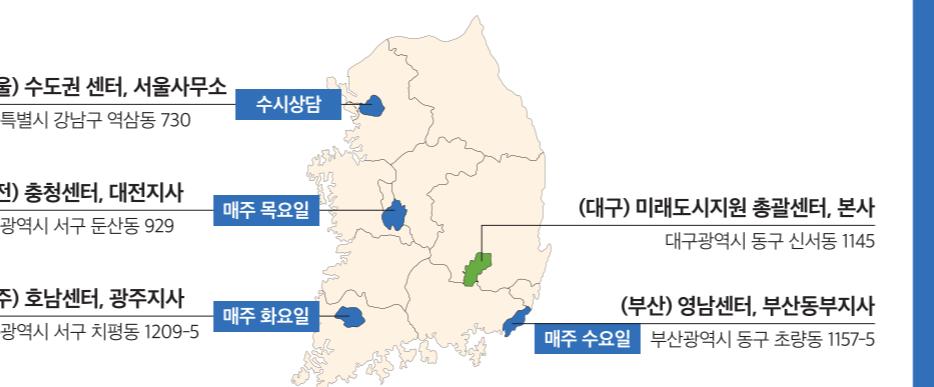
민간 정비사업 관심 주민, 지자체 담당자 등 컨설팅, 상담 희망자

■ 신청 방법

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(<https://www.reb.or.kr>)에서 신청
 (홈페이지 - 국민소통 - 도시정비 관련 - 미래도시지원센터)

■ 온·오프라인 상담센터

- 온라인 :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방문하여 문의·컨설팅 신청
- 오프라인 : 총 5개소 *사전신청 통해 일정조율 필요



06 FAQ

Q. 대면상담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?

A. 홈페이지나 유선전화(053-663-8320)를 통해 컨설팅을 신청하여 기초 상담 후 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하여 대면상담이 가능합니다.

Q.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나요?

A. 현황분석, 법률상담 등 컨설팅은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, 추정분담금 검증, 사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등 업무는 비용이 발생합니다.



문의처



053-663-8320

미래도시지원센터 정비사업 종합 컨설팅

KOREA REAL ESTATE BOARD



01 미래도시지원센터 소개

■ 추진 배경

『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』(24.1.10)에 따라 온·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속도감 있는 도심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함

■ 주요 지원 내용



■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 구조



■ 정비사업 지원기구 대행기관 (한국부동산원)

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, 한국부동산원 등에게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음
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4조, 국토부 고시 제2022-721호)

02 컨설팅 주요 지원내용

